	_	보도ᅏ	017101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2년 8 총	다한민국의 12/31				
담당 복지정책과	담당자	<ul><li>생활보장팀</li><li>담당자</li></ul>	• 생활보장팀장 함교춘 ☎440-2931 • 담당자 고경욱, 주애경 ☎440				
사진(이미지)	■ 없음	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	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니다.			

# 인천시, 위기가정 방문 전수조사 나선다

- 29일, 군·구 복지국장 긴급간담회 실시 -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552여 미신청가구 방문 전수조사 -
  - 생활실태, 안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연계 -

최근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위기가정 방문 전수조사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29일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재로 군·구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저소득층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미신청자 552여 가구에 대한 방문 전수조사를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9일 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지원한바 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총 124,313가구 중 123,548가구(99.4%)에 지역화폐(인천e음)를 가구별 차등지급(총 약 568억 원) 했다.

그러나 시는 수혜대상 가구 중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약 552여 가구의 미신청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해 전수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의 생활실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은 개별욕구에 따라 공적복지급여, 지역형(SOS 긴급 지원, 디딤돌 안정소득)복지사업, 민간자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이번 전수 방문조사를 통해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위기가정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 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저소득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선정기준을 완화했으며, 지하철(1.2호선)과 온라인 등을 이용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SOS 긴급복지」는 재산 선정기준을 3억원 이하로 완화해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못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비, 해산・장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 가구를 이전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했다.

아울러, 동(洞)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17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관련사진〉

## 참고1

### 인천시 시민 안심복지사업 개요 및 선정기준 완화

『SOS긴급복지 지원』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o 대 상 : 위기사유 발생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사유 9개 항목 o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b>85% 이하</b> - (재산기준) : <del>1억8천8백만원 이하</del> → <mark>3억원 이하</mark>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o 대 상 : 기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 o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50%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 3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9억) 이하 o 사적 이전소득 : 미적용			

#### SOS 긴급복지 개요 참고2

- □ 지원대상 : ①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②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③ 기타 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 종료 시점 6개월 경과후 동일사유로「인천형 긴급복지」지원 가능
- □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 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 소득·재산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당초 (85% 이하)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 (재산) <del>1억 8,800만원</del> ⇒ **3억원**
- (금융재산) 1,0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 반영
- (재지원 제한) 2년 이내 → 6개월 이내 동일 사유로 재지원 불가

#### □ 지원내용

#### ※ 최대지원 횟수는 긴급복지(정부형)와 동일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천원 (4인기준)		
금 전	위 기 상 황 주급여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이내		
(신 - - 현 물	주급여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4인기준)		
시	부가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24.1천원/중 174.7 천원/고 207.7천원 및 주업료·입학금		
원	부가 급여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06처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_		

# 참고3 디딤돌 안정소득제도 개요

□ 사업기간 : 연중(소득평가액 확대는 2022.7.1.부터)

□ 지원대상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200여 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제(SOS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O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Rightarrow 50\%$  이하 가구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선정기준 (중위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O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O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금급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